

하동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6. 6



하 동 군

제1장 사업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노선은 하동역 이전에 따라 하동(신)역사와 국도 및 (구)역사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하동(신)역사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복합교통타운과 연계하여 하동의 중심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2.개발기본계획의 가. 도시의 개발”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법적 실시근거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근거 법령
<p>[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p>[시행령]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p> <p>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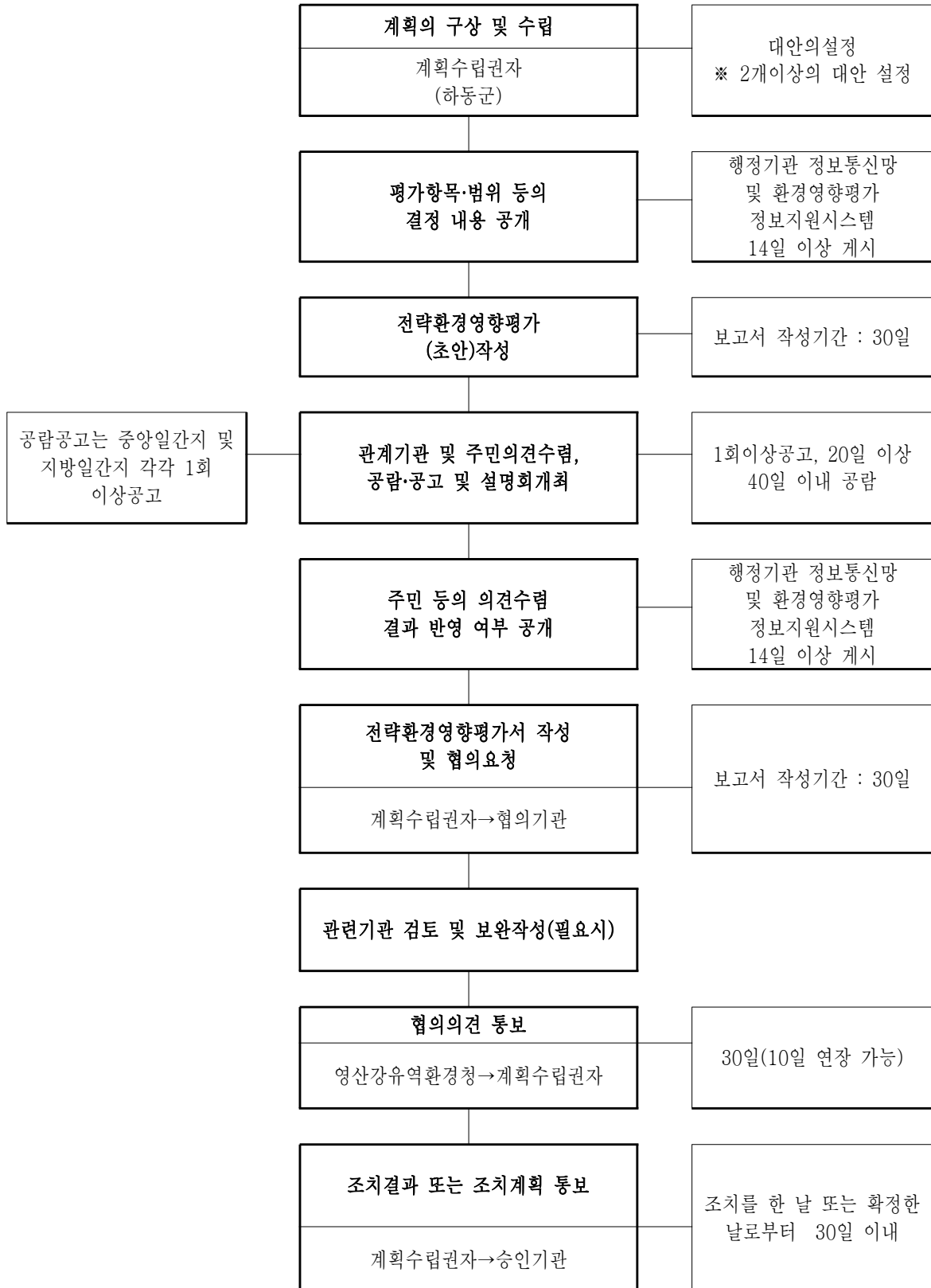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현재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 단계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 본 계획대상지는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주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연경관영향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3 추진절차



1.4 계획의 내용

가. 사업명 : 하동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번지 일원

(시점 : 종로2-6, 종점 : 종로1-1호선)

다.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다. 사업자 : 하동군

라. 승인기관 : 하동군

마. 계획연장 : L=809m(B=20m)

<표 1.4-1> 도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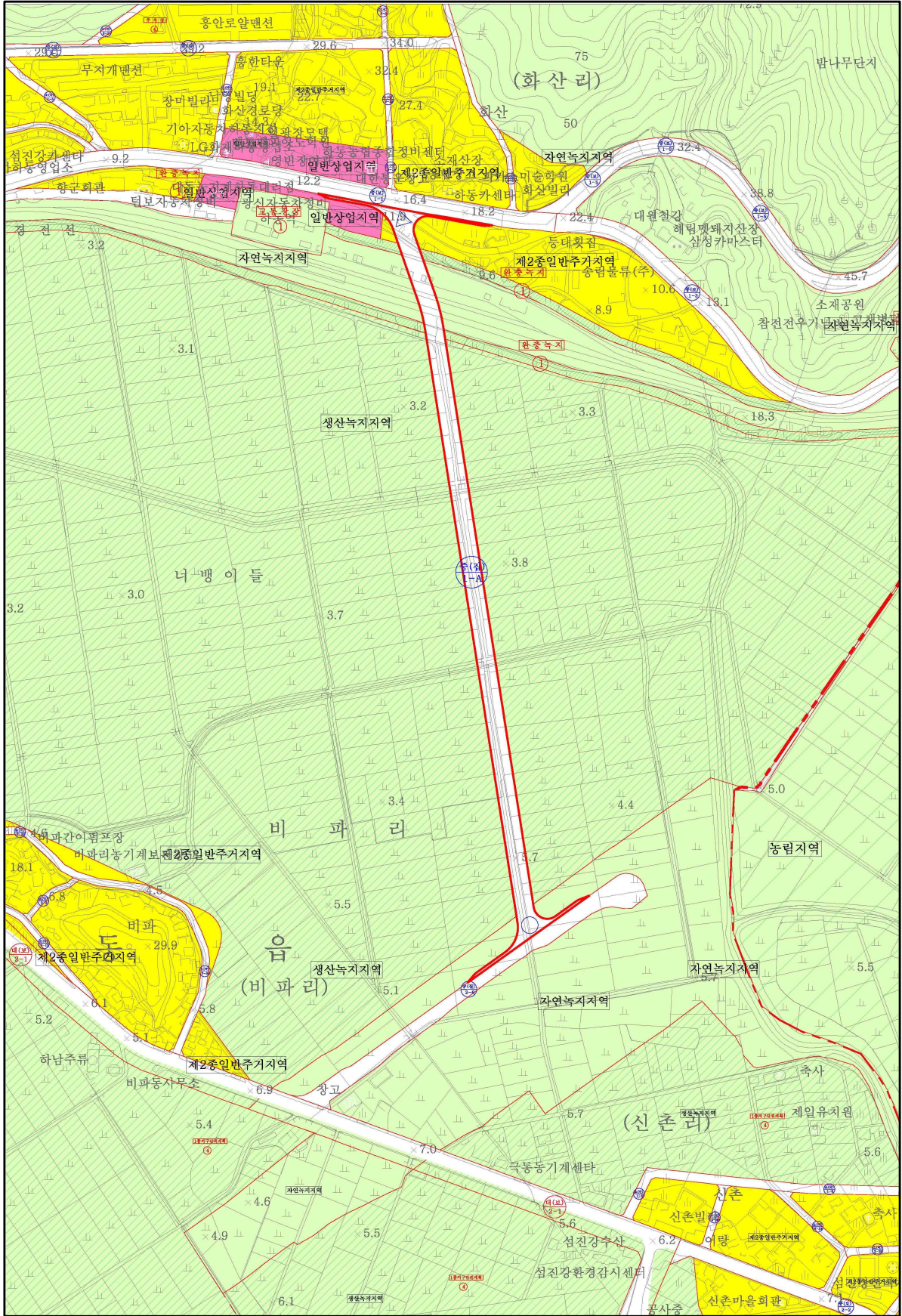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A	20	국지 도로	809	중로2-6호선	중로1-1호선	일반 도로	-	-

<표 1.4-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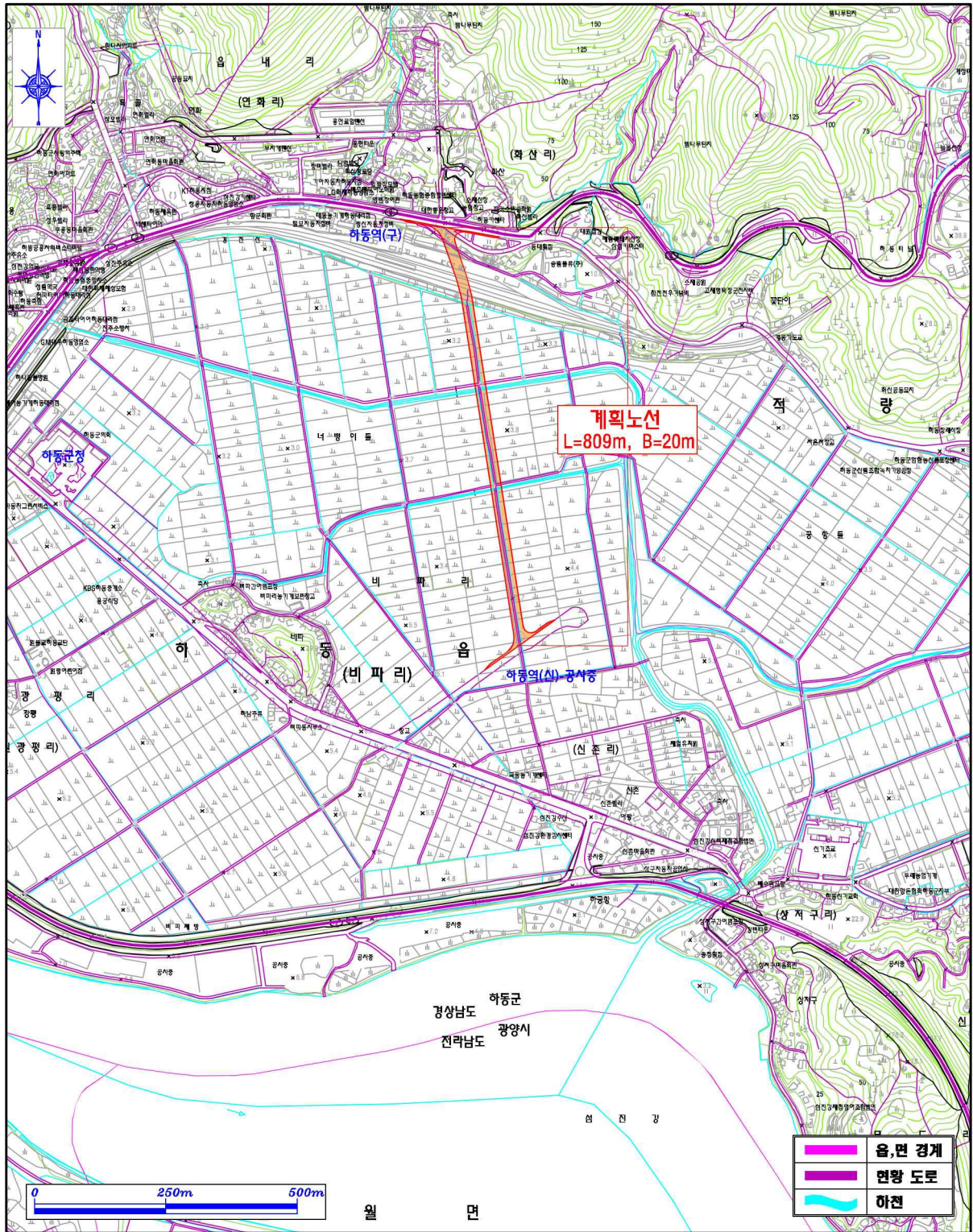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A호선	노선 신설 B=20m, L=809m	하동역 이전에 따라 하동(신)역사와 국도 및 (구)역사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신설

<표 1.4-3>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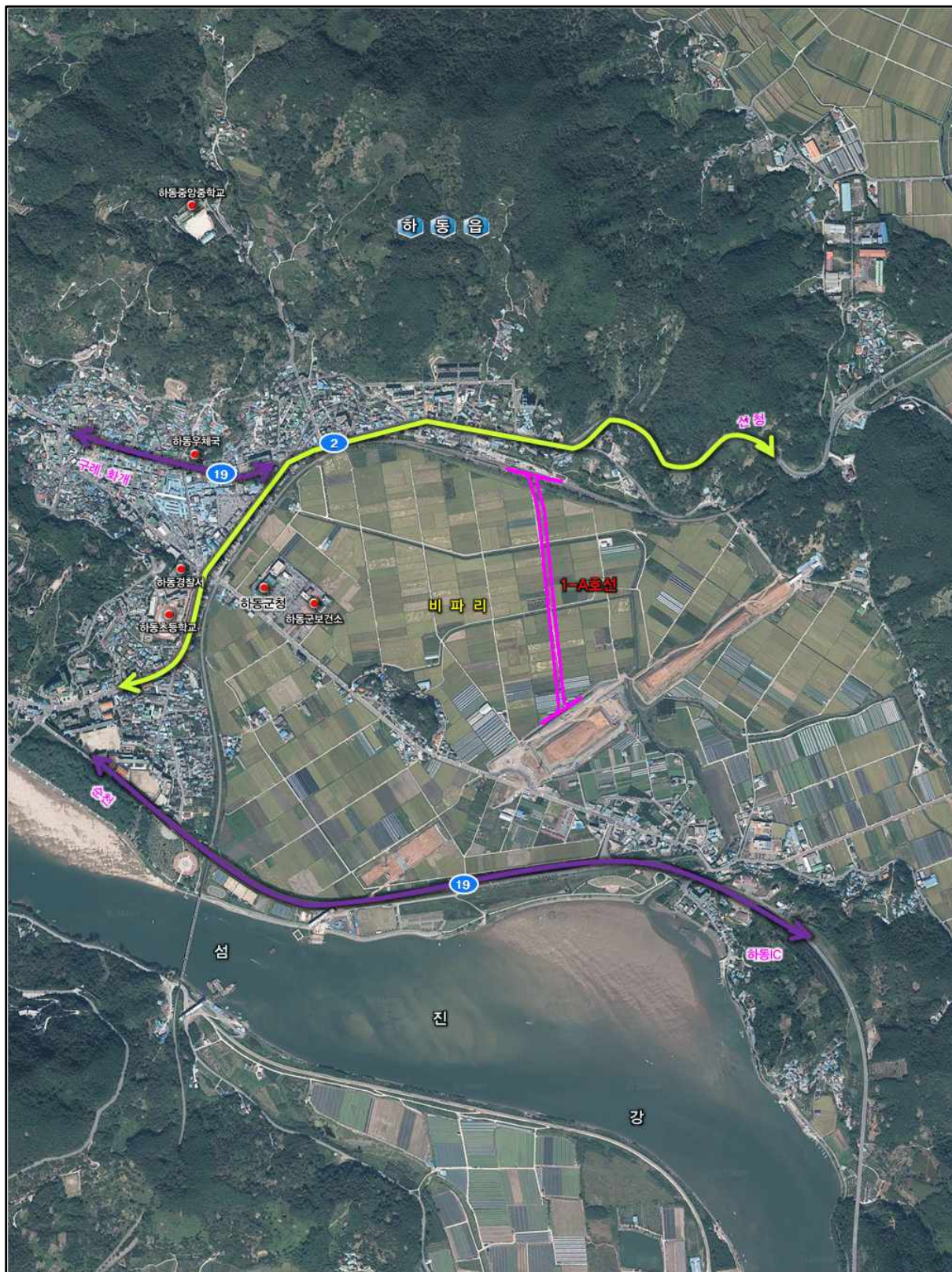
구분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중로1-A호선	면적㎡	17,434	236	1,252	3,301	12,645
	구성비(%)	100.0	1.4	7.2	18.9	72.5



<그림 1.4-1>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그림 1.4-2> 계획노선 위치도(5000도)



<그림 1.4-3> 계획노선 위치도(위성사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은 하동(신)역사와 국도 및 (구)역사간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연장 800m, 폭 20m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로임.
- 본 계획수립으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예상되는 영향범위를 과학적 근거하에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획의 성격, 규모, 환경여건 및 대상지역의 특성에 기초하여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설정하였음.
- 따라서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요소 및 인자를 고려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대상지역의 검토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음.

<표 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설정사유	평가대상지역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하동군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연계성 확보	하동군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검토를 통한 계획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 생태자연도, 보호구역 분포 파악 ○ 녹지체계 구축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지질 현황 및 입지특성 파악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제외	제 외		
	수환경의 보전	○ 수질보전 관련 구역지정 현황 파악 ○ 장래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유출 특성 파악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상	○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대기오염도 현황 파악 ○ 장래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양	○ 제외	제 외
		소음·진동	○ 소음도 현황 파악 ○ 장래 개발사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제외	제 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행정구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 장래 개발사업시 폐기물 발생 예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도시관리계획 현황 파악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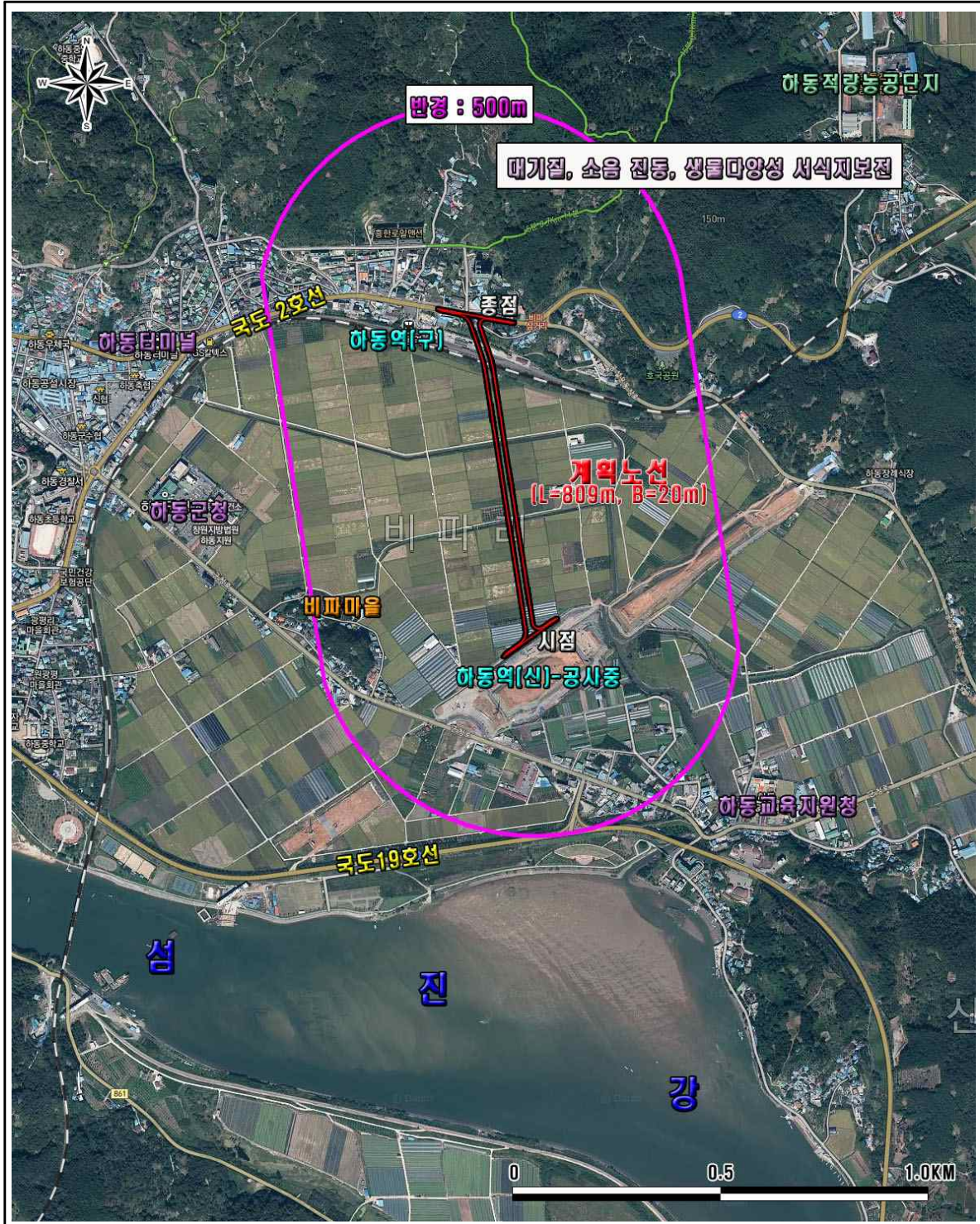
2.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가. 평가항목 설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의거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2.2-2>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평 가 항 목		선정/제외 사유	비 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여부 검토	중점 검토항목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하동역(구) 및 하동역(신)의 연결에 맞는 대안설정 및 분석 필요	중점 검토항목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의 다양성·서식지 보전	· 친환경적 노선계획을 위해 필요	중점 검토항목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친환경적 노선계획을 위해 필요	중점 검토항목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본 계획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제 외	
		수환경의 보전	· 친환경적 노선계획을 위해 필요	중점 검토항목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 상	· 평가 기본 항목으로 활용	일반 검토항목
			대기질	· 공사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중점 검토항목
			토 양	· 본 계획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제 외
			소음·진동	·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 발생	중점 검토항목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본 계획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제 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에너지 등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중점 검토항목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친환경적 노선계획을 위해 필요 · 입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검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중점 검토항목	



계획노선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기상, 대기질, 소음·진동
계획노선 인근수계	수환경의 보전

<그림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개발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환경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3>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평 가 항 목		평 가 범 위	평 가 방 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하동군	◦하동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노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 의 보전	생물의 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성평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해당여부 및 이격거리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백두대간 및 정맥에 해당여부 및 이격거리검토, ◦표고 경사 등 지형현황 파악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경관보호지역 해당여부 및 연관성검토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수계 및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연관성검토	
	생활환경 의 안정성	환경기준 의 부합성	기 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노선과 최 인접한 기상대의 기상 자료 조사·분석 ◦환경현황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영향 검토 ◦환경현황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 검토
			대기질	
			소음·진동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폐기물 발생영향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주변환경과 환경친화적인 노선 검토	

제3장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5. 12, 환경부”중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였음.
- 또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대안의 종류 중 계획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획비교”측면에서 대안 설정·검토를 실시함.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의 종류 설정	
○ 정책계획 :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등을 검토 제시	
○ 개발기본계획 : 개발입지 대안, 중점평가항목별 대안과 토지이용계획(또는 노선) 대안의 종류를 검토하여 제시	
- 개발입지 대안 : 개발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 및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입지 대안의 종류(2~3개)를 검토 제시	
- 항목별 대안 : 스코핑을 통해 결정된 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또는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대안의 종류(2~3개)를 검토 제시	
- 토지이용계획(또는 노선) 대안 : 항목별 대안과 “개발수단·방법, 입지조정 등”의 대안유형 중 필요한 대안을 선정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의 종류(3개정도) 설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5.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호)별표 3참조

3.2 대안의 선정 및 비교

- 본 계획의 대안 선정은 대안의 종류 중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3.2-1> 대안의 설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내 용	
		1안	2안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 본 계획은 하동(신)역사와 국도 및 (구)역사간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신설하는 행정계획으로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대안의 수립보다는 계획자체에 대한 비교·검토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no 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를 대안을 선정하였음.
- 대안비교결과, 토지의 활용성을 고려한 경제적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 등을 절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대안 2를 계획안으로 제시함.**

<표 3.2-2> 대안의 비교 및 선정

구 분	대안 1 (No Action)	대안 2 (Action)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음(No 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신)역사와 국도 및 (구)역사간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L=800m, B=20m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수립할 계획임.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수립이 없이 환경적으로 현상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신)역사와 국도 및 (구)역사간 대중교통의 활성화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미수립으로 하동(신)역사와 국도 및 (구)역사간 이동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통으로 차량통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 및 소음·진동 피해 우려됨.
결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수립으로 하동(신)역사와 국도 및 (구)역사간 접근성 및 이동성 제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2를 계획안으로 채택함. 	
채 택		●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본 개발기본계획의 주민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수렴된 의견은 개발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임.

<표 4-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근거 법령

<p>■ 환경영향평가법</p>
<p>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